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6호 2025. 8. 18.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 2
- 도로지정 (건축허가, 신고) 공고 12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3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목포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 목포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3.

목 포 시 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3년 / 2026. 1. 1. ~ 2028. 12. 31.

3. 금고의 수 : 2개

○ 제1금고 :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제2금고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기타 기금

특별회계 (7)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자원순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

기금 (16)	통합재정안정화(통합, 재정안정화), 지방채상환, 자활, 양성평등, 식품진흥,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중소기업발전, 재난관리, 옥외광고발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 고향사랑, 공유재산관리
---------	---

※ 약정기간 내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에 지정

4. 신청자격 :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공고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취급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및 일정

- 관련 서류 열람
 - 열람서류 : 2023 ~ 2024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시홈페이지(www.mokpo.go.kr) - 정보공개 - 재정정보】에서 상시열람 가능
 - 시금고운영조례 등 관계법령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에서 조회
- 금고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5. 8. 22. (금) 15:00
 - 장 소 : 목포시청 소회의실 (민원봉사관 2층)
 - 대 상 : 시 금고지정 희망 금융기관
 - 내 용 : 제안서 작성 요령 등 (「목포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배부)
- 제안(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5. 9. 8.(월) ~ 9. 9.(화) (2일간) 10:00 ~ 18:00
 - 장 소 : 목포시청 세정과(민원봉사관 2층)
 - 방 법 :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금고 지정 신청서 1부(원본)
 -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요약서 12부 별도
 - ※ 통합공모 방법에 따라 모든 제안 내용은 단일 제안만 가능(조건부 제안 금지)
 -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원본대조필, 색인 표시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각 1부

- 그 밖에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 신청 은행별 제안서 부수 등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받은 자의 사용인감 지참
- ※ 제출자료 중 사전검증을 위한 증빙자료(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 주요경영지표 현황 등), 법인의 일반적인 사항 및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포된 자료 등 부속서류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미봉인 제출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2 참조

8. 평가 및 금고지정 방법

-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공개 심의·평가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프레젠테이션(5분 이내)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직접 확인 하거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대면 심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 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기타 평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하되,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시금고로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목포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한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진행함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용되어야 하며, 정상 운용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있으며, 금고 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금고은행이 변경 될 경우 인계·인수반이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신·구 금고 간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협력사업비

-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시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 매년 납부하기로 한 협력사업비(출연금)를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일수만큼 산출한 변상금을 목포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시금고 약정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적용과 출연금 납부 등 제안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11.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금고 운영을 위한 세정정보센터 설치 운영,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12. 기타사항

- 제안서는 「목포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 바람
- 금고지정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의 세부사항은 「목포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르며, 금고 지정 및 약정 관련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에 문의

【붙임】 1. 목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4	
	- 국내평가기관(4점)	4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6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II.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2) 평가방법 :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다)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4)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만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및 금고 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 8. 12.

목 포 시 장

-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3.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8. 27.(15일간)
-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948	주식회사 왕도*	2025-건축행정과-신축 허가-11	132	8	1130	동의
2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407-7 외 16필지	(주)부지런한 사람*	2025-건축행정과-신축 허가-27	17	3	17	동의
3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407-7 외 16필지	(주)부지런한 사람*	2025-건축행정과-신축 허가-27	12	3	12	동의

※ 지정도로의 형상에 따라 길이,너비 등의 수치가 부정확 할 수 있음.

-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 건축행정과(☎061-270-345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8일

목 포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석현과선교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2-6	목포시청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암1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55				
선곡교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030				
옥암1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70				
옥암2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13				
옥암3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97				
옥암4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34-2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목암5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233-1	목포시청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당1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335				
초당2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324				
초당3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313				
초당4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298				
초당5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314				
상동교(좌)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34-3				
상동교(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81				
RAMP-C교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614-287				
산정동 동초 앞 육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208-2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24				
목암 자전거 육교	전라남도 목포시 목암동 1124				
갯바위터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697-2				